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7년 4분기

Vol. 13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전문가와의 만남

-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 해외 공공부문 회계기준 동향
- 국가회계 재무결산 동향

재정통계 동향

-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 2016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특집

-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센터동향

-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개최
-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 국가·지자체 회계 발전방안 간담회
-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 발간
-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센터위탁과제 최종보고

세미나

- 육군본부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
-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운영
-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 발표
-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동계학술대회 발표
- 2017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발표

기본과제 관련 IMF 출장 후기

- 2017 기본과제 관련 IMF 담당자 인터뷰

공지사항 : 연구과제 수요조사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안내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7년 4분기

Vol. 13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전문가와의 만남	2
①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2
02. 국가회계 동향	12
①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12
② 해외 공공부문 회계기준 동향	18
③ 국가회계 재무결산 동향	24
03. 재정통계 동향	26
①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26
② 2016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27
04. 특집	38
①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38
05. 센터 동향	46
①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개최	46
②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46
③ 국가·지자체 회계 발전방안 간담회	48
④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 발간	49
⑤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50
⑥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51
⑦ 센터위탁과제 최종보고	52
06. 세미나	55
① 육군본부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	55
②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57
③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세션 운영	67
④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 발표	70
⑤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동계학술대회 발표	75
⑥ 2017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발표	83
07. 기본과제 관련 IMF 출장 후기	88
① 2017 기본과제 관련 IMF 담당자 인터뷰	88
08. 공지사항: 연구과제 수요조사	91
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91
② 뉴스레터 이용 안내	92
③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92

01

전문가와의 만남

1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 일시 : 2017.12.06.
- 장소 : 연세대학교 경영관
- 진행 :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 정리 : 우원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



□ 학력

- 1971. 연세대학교 경영학 졸업
- 1974.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77.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86. 뉴욕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박사

□ 경력

- 1981. 연세대학교 경영학 교수
- 1990.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
- 1992. 한국증권감독원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 1994. 국제심판소 비상임심판관
- 1994.09.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 학과장
- 1995. 한국리스협회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
- 1997.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1998. 한국금융감독원 회계제도특별위원회 위원
- 1998. 한국회계학회 회장
- 1998. 연세대학교 교무처 처장
- 1998.3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 1998. 일본국제회계학회 명예회원
-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세재정위원회 자문위원
- 2002.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담당 부회장
- 2002.07 연세대학교 기획실 실장
- 2006.03 제 4대 한국기업윤리학회 회장
- 2007.03 한국경영학회 회장
- 2009.11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회장
- 2010.03 한국감사원 정책자문위원
- 2012.12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 2016.11 국제회계사연맹(IFAC) 부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금번(2017년 4분기 Vol.13)에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차기회장 주인기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담았음

가. 국제회계사연맹(IFAC¹⁾)은 어떤 조직인가?

Q1. IFAC의 기능, 역할 등 기관 설명과 현재 부회장으로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국제회계사연맹(이하 'IFAC')은 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1개국 180개 회계전문단체와 300만 명의 회계사가 가입해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IFAC은 4가지 미션(mission)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윤리기준,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에서 제대로 잘 채택되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국의 회계사회가 그 나라의 회계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셋째는 전 세계 회계사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넷째는 세계기관으로서 회계적 이슈나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 각국 회계사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FAC은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것이 IFAC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역할이다.

저는 현재 부회장으로서, 차기회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직위를 맡고 있다. 현재 맡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의 위원장이다. IFAC 이사회 산하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그리고 홍보자문그룹(Public Policy and Regulation Advisory Group)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과 예산을 맡고, 지배구조위원회는 법, 정관 개정과 각 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위원회는 공시하는 재무보고서와 리스크 관리보고서를 감사하는 역할과 내부감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홍보자문그룹에서는 회계 관련 국제적 이슈에 대하여 목소리(global voice)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을 준비하고, 이사회 회장은 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사회 안건 상정을 결정한다.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역할이 큰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사회 회의(Board Meeting) 전에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Q2. 2018년 11월부터 IFAC의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하다. 또한 국제조직을 이끌 때 본인의 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의 경영 철학은 조직원들의 역량을 신뢰하고,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자는 것이다. 실제로 IFAC은 조직원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IFAC은 수행할 미션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며, 미션별로 책임자(director)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일을 맡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조직 내부에서는 각 부서 간 의견 조율에 관심을 가지며, 외적으로는 IFAC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회계사들과 IFAC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또한 제가 강조하는 캠페인은 '윤리'다. 윤리에 대해서 아직도 규제기관과 회계사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회계사회에서 생각하는 윤리 수준과 규제기관에서 생각하는 윤리 수준은 차이가 있다. 회계사들은 '이 정도면 자신 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규제기관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갭(gap)을 줄이기 위해, 규제기관과 회계사 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캠페인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개업회계사가 아닌 교수인 제가 IFAC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바로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IFAC은 기본적으로 개업회계사들을 위한 단체임에도, 개업회계사의 관점을 넘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IFAC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회계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규제기관이나 사회에서 회계사들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리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규제기관과 회계사들은 규제하는 자와 규제받는 자의 단순한 대립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회계사들의 윤리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회계사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규제기관이 바라는 규제가 회계사들의 관점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사회적 관점에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한 규제, 필요 없는 규제는 폐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철학이다.

Q3. IFAC는 131개 국가, 180개의 회원조직과 300만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 사례가 있을 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린다.

A.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기관과 피 규제기관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음으로 대형 회계법인과 소형회계법인의 갈등이다.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이 대형회계법인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대형회계법인이 힘이 있다는 것은 돈보다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소형회계법인은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소형회계법인들의 대표들이 IFAC의 각 위원회의 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12.6.), 연세대학교 경영관 415호〉

다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회계사회에 대한 지원은 그 지역에 있는 선진국들의 회계사회와 협력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선진국(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회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시키고, 아프리카·중동은 유럽의 회계 선진국과 연계시키며,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와 연계시켜 지역별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하여 IFAC이 기술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Q4. 국제적으로 한국의 회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국제적으로 한국의 회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IFAC의 회장이 될 길이 열렸지만, 한국에서 언제 다시 회장직을 배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IFAC에 회장직을 주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한국은 국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국력에 비하여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국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눈앞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국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국제활동에 소극적이다. 이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손해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손해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 다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해야만,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게 되면,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호주,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국가끼리 네트워크가 생기게 된다.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같이 일하며 얻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이익(benefit)은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국제동향을 알고 미리 대처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국제기구에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의견을 개진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한다. ‘침묵이 금이다.’는 것은 국제기구에서의 미덕이 아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점을 제안해야 하고, 그것이 전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국제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기구 경험이나 참여수준이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솔직히 말해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회의를 하나의 해외여행쯤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회의보다는 끝나고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시아권 국가 중 일본, 홍콩, 싱가폴은 계속해서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적인 무대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기구에 한 사람이 진출하면,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회계를 잘 안다고 한국의 회계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시각과 경험, 조직 운영의 경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직 한국은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²⁾) 진출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Q1.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위원에 한국인(정도진 소장) 최초 진출의 의미와 한국의 국가회계 발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우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든 안 하든 혹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든 안 하든 간에 국제동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진 소장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 위원 진출은 매우 축하드릴 일이다.

정도진 소장이 IPSASB에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위원들이 18명인데, 100개국이 넘는 데서 18명 내에 뽑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10개국은 선진국에서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명이 선출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공공부문 회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가 한국의 국가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에 IPSASB 위원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일본은 IPSASB위원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일본은 우리의 양보와 도움으로 IPSASB위원을 지원하는 기술자문(Technical Advisory, 이하 'T.A.') 자리를 배정받게 되었다. 일본공인회계사(JICPA) 회장이 T.A.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왔다. 일본은 발생주의 회계를 잘 사용하는 국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로 미국과 독일 등 전 세계 18개 국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회의장에 T.A. 역할 정도만 배정만 해줘도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선진국의 의식 수준이다.

정도진 소장이 IPSASB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듣고 배운 구체적 동향정보를 기획재정부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브리핑(briefing)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동향과 발전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공유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식이 특히 정부관계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 공공부문 회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Q1. 최근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 및 지방회계의 상호협력과 발전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발전의 역사가 다르다. 국가회계기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중앙정부 위주로 발전하였고, 지방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발전하였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련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강제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통합할 필요는 없지만, 의견 교환을 통한 지적 교류는 필요하다. 서로 지식 교환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국가회계 분야에 지적역량이 높기 때문에 지방회계 분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공공부문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회계사 시험에서 정부회계의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험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선수과목으로 공공부문 회계과목을 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5개(현재 정부회계 5문항 출제)로, 그것도 선다형으로 공공부문의 지적수준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선수과목을 많이 듣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회계의 경우는 행정 시스템도 알아야 한다. 행정학원론을 수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 과목을 많이 수강한 사람이 회계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개인의견인데 이제는 지식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전문가를 선별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와 잘 맞지 않는다. 전문적인 정규교육을 끝낸 사람이 소정의 시험을 통해 회계사가 되어야 한다.

Q3. 국가회계를 포함한 공공부문 회계를 대상으로 향후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이용자와 정보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보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일 수도 있고, 현금주의 재무정보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발생주의 회계가 답이라고 정답을 내리고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진정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서 회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회계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회계를 모르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 전반적인 회계지식의 활용을 어떻게 공공부문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 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근본적(radical)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행정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효율적이고, 그 행정시스템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때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좋을 수도 있고, 현금주의 재무정보가 좋을 수도 있다. 근본적인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덧칠하는 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놓고, 여기에 발생주의 회계를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니, 연구가 계속 헛도는 것 같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나라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12.6.), 연세대학교 경영관 415호〉

Q4. 국가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나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A.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회계기준의 독립성과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적이며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진정한 국가에 필요한 회계기준을 연구하며 공표할 수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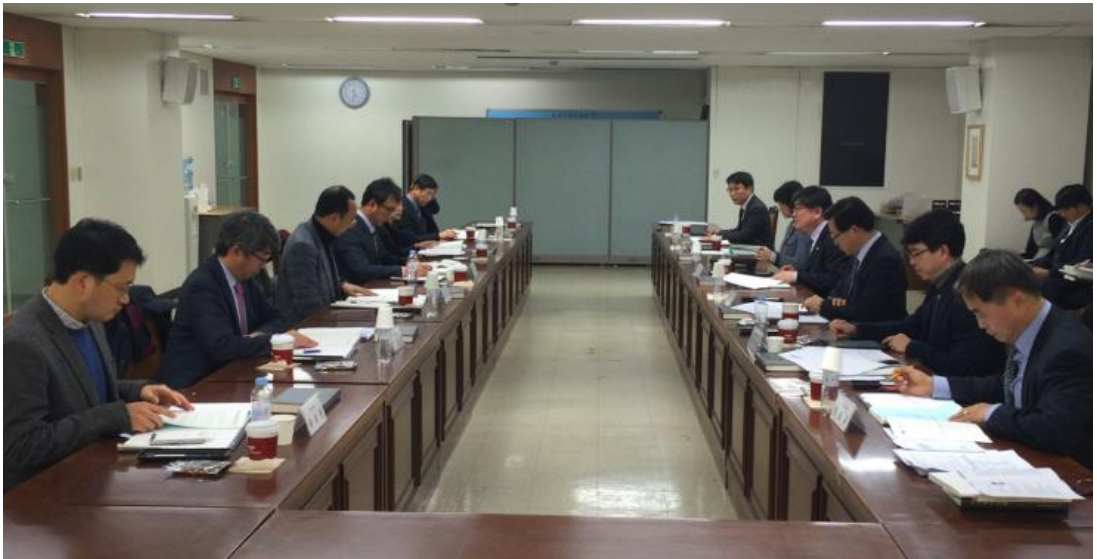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가. 제2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최종심의·의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12월 15일 개최되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이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공포되며,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12.15.),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총 5회, '17.8.11.~11.27.)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기준검토 실무작업단 회의(총 2회, '17.8.11.~11.27.),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총 2회 및 사전회의 1회)의 검토를 거쳐 제2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1)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유보된 ‘주석·부속명세서·필수보충정보 개편’ 등 5개의 개선과제는 장기과제로 2018년 T/F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개최현황 및 개선과제〉

T/F	대상	논의 대상 개선 과제	소위원회 상정
1차(8.11.)	-	• 전체 개선과제 요약 보고, 향후 TF 논의 과제 결정	-
2차(9.8.)	규칙, 예규	• 우발상황 회계처리 규정 개정	2차
	규칙, 예규	• 주석·부속명세서·필수보충정보 개편	장기과제
	규칙, 예규	• 공정가액 평가 대상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 환율	1차, 2차
	규칙, 예규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작성 범위 검토	제외
3차(10.10.)	예규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인식기준 명확화	2차
	예규	•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2차
	규칙, 예규	• 외화자산·부채 최초 인식 시 환산환율	제외
	예규	• 용자금 및 대여금 개편	1차, 2차
	예규	• 보험수리적 손익의 분류 변경	장기과제
	예규	• 퇴직수당충당부채 회계처리 명확화	장기과제
	예규	• 소액 다수의 내부거래 상계 관련 지침	2차
4차(10.31.)	-	• 연금보고서 간소화	장기과제
	예규	• 금융상품 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삭제	제외
	예규	• 미수국세 채권 제각기준 수정	2차
	예규	• 비배분수익·비용 예시규정 삭제	2차
5차(11.27.)	-	• 결산개요 개선(신규지표 장기과제)	장기과제

2017년은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계획 (로드맵)’에 따라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진 첫 해로서, 향후 기준 개선의 체계적 절차를 강화해갈 예정이다.

2) 국가회계예규 개정안 검토 실무작업단 제2차 회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과제의 일부로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 개정(안)의 완전성과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9월 14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센터에서 제출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서면 축조심의를 거쳤으며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실무작업단 회의를 10월 16일 한국재정정보원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실무작업단은 수정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문단별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실무작업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전부개정(안)을 완성하였다.

이 전부개정(안)은 제4차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17.10.31.)에 제출되었다.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0월 13일, 11월 10일 2차에 걸쳐 서울 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소위원회는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 국장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전문위원 8인이 참석하여 부령 및 예규의 개정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전상정을 위하여 1·2차 소위원회 논의 결과 이외에 소위원회 사전회의를 11월 20일부터 4일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민간위원 8명을 직접 방문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건 및 심의 결과〉

소위		법령(예규)명	개선 과제	비고
차수	안건			
1차(10.13.)	의결 1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기준 보완	2차 상정
	논의 1	• 용자회계처리지침	• 용자금 및 대여금 분류기준 명확화	
2차(11.10.)	의결 1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인식기준 명확화	본회의 의결안건 확정
	의결 2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 개정(안)	
	보고 0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기준 보완	
		• 용자회계처리지침	• 용자금 및 대여금 분류기준 명확화	
	보고 1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 소액·다수의 내부거래 상계 관련 지침 신설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비배분수익·비용의 정의 명확화	
		•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 미수국세 채권 제각기준 명확화	
사전회의(11.20.~24.)	1차·2차 소위안건 전체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및 수정사항 취합			

기획재정부는 소위원회 및 사전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3개의 최종 안건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2차(11.10.), 서울지방조달청 본관3층 회의실〉

나. 2017년 주요 개정사항

12월 15일 개최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이 최종 의결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규칙 및 예규
규칙 및 예규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기준 보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7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문단25, 39)
	②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0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전부개정)
예규 (본문)	③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인식기준 명확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문단6)
예규 (실무해설)	④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상동(실무해설 및 문단제정근거 신설)
	⑤ 용자금 및 대여금 분류기준 명확화	용자회계처리지침(계정과목 변경)
	⑥ 소액·다수의 내부거래 상계 관련 지침 신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실무해설)
	⑦ 비배분수익·비용의 정의 명확화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실무해설)
	⑧ 미수국세 채권 제각기준 명확화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기준 보완

외화자산·외화부채의 평가기준 및 화폐성 항목의 정의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문단25, 39)을 개정하였다.

공정가액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항목의 기말 환산 시 적용 환율을 공정가액 측정일의 환율로 규정하고, 환율변동효과와 재무제표 반영방법을 보완하였다. 화폐성 항목의 정의는 ‘금액이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된 자산·부채’에서 ‘금액이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자산·부채’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개정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예규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우발상황)를 개정하고, 예규명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으로 변경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유효하지 않은 용어인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측정 및 인식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례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누락된 충당부채의 변제, 변동 및 사용 규정을 보완하였다. 전부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로 용어가 변경되나, 실제 회계처리 및 공시수준에는 영향이 없다.

3)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자산 인식기준 명확화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과 무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자산의 국유재산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 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자산 인식조건과 상충되는 실무지침(‘국유재산대장 등재시점에 인식’ 문구)을 예규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예규 본문상의 소액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50만원 미만’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실무해설로 보완 설명하였다.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법과 동일하게 소액자산의 판단기준이 취득단가로 변경되고,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해외 공공부문 회계기준 동향

가.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IPSASB³⁾)

1) 공개초안 62, ‘금융자산’ 발표(Exposure Draft 62, Financial Instruments)

2017년 8월 24일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공개초안 62, ‘금융상품’(이하 ‘공개초안 62’)을 발표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개발한 IFRS 9, ‘금융상품’에 기초하고 있다.

공개초안 62 ‘금융상품’(principle-based)은 기존의 IPSAS 2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rule-based)의 개정안으로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로 분류·측정함: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범주를 단순화하여 이해가능성 증대
- 손상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 상품에 단일의 기대신용손실 모델 적용(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 손상규정의 일관성 및 이해가능성 증가
- 지칭 범위 내의 헤징(hedging)관계를 확대하는 개선된 위험회피회계모델 적용: 회계실체의 위험 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IPSASB는 공개초안 62를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 ① IPSASB는 IFRS 9의 완화규정과 일관되게 IPSAS [X] (ED 62)에서 회계실체들이 IPSAS 29 위험회피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PSASB의 제안에 동의 하십니까?

3)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IPSAS)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로 미국과 독일 등 전 세계 18개 국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② IPSASB는 IPSAS [X] (ED 62)로의 전환에 따른 증대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이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IPSASB는 IPSAS [X] (ED 62) 초안이 발효될 때까지 (조기 도입이 허용될 예정) 3년간의 이행 기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IPSAS [X] (ED 62)가 의무적용 되기 전에 제안된 3년 이행 기간에 동의하십니까? 설명바랍니다.
- ③ IFRS 9와 일관된 경과규정(문단153-180)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특별한 변경 사항을 권고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초안 62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더 확대하여, 실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다. IFRS 9과 동일하게 IPSAS 29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질문①)

또한, 경과규정의 주요내용은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과 오류의 변경' 기준에 따라 소급적용이 원칙으로 하나, 위험회피회계는 IPSAS 29와 공개초안 62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고 몇 개의 예외 사항⁴⁾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질문③)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7-08/ipsasb-works-improve-reporting-financial-instruments>

- 4) ①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면,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소급적용
- ②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면,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소급적용
- ③ 법규의 결과로 또는 법규의 도입으로,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계약상대방의 교체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 경우 소급적용

2) 공개초안 63, '사회보장급여' 발표(Exposure Draft 63, Social Benefits)

2017년 10월 31일에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초안 63, '사회보장급여'(이하 '공개초안 63')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개초안 63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 실업, 장애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공공부문 실체의 보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비교환거래에 속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개초안 63은 사회보장급여를 "사회적 위험(social risks)⁵⁾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조건을 충족한 특정 개인 또는 가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ly accessible services)⁶⁾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인식 및 측정,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부가정보의 공시 관련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사회보장급여가 공공부문의 주요한 지출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한 IPSAS 기준서가 없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부분이다. 이번 공개초안에 담긴 회계처리 대안들은 회계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익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7-10/ipsasb-seeks-comments-social-benefits-accounting-proposals>

5) 공개초안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을 "연령이나 건강, 빈곤, 고용상태와 같은 개인이나 가계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소득 감소 등 개인과 가계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6) 공개초안은 보편적 서비스(universally accessible services)를 "정부실체가 모든 개인 또는 가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의 수급조건이 사회적 위험과 무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개정된 현금주의 IPSAS 발표(Revised Cash Basis IPSAS)

2017년 11월 8일에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현금주의 회계에 따른 보고' (이하 '현금주의 IPSAS')를 개정한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에 최초로 발표된 현금주의 IPSAS는 IPSASB가 공표한 기준서 중 유일하게 현금주의 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서는 공개초안 61, '현금주의 회계에 따른 보고의 개정'을 바탕으로 하며, '현금주의 IPSAS'의 국제적 도입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 외부 지원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정보의 공시
- 제3자 지급에 관한 정보의 공시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금주의 IPSAS를 적용하는 데 방해되는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금주의에 따른 재무 보고를 견실하게 하는 것 역시 공공부문의 재무관리를 폭넓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지만, '현금주의 IPSAS'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완전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개정된 기준서는 그러한 IPSASB의 견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현금주의 IPSAS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7-11/ipsasb-issues-revised-cash-basis-ipsas>

나. 미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⁷⁾)

1) 연방재무보고개념 8, ‘연방재무보고’ 발표(SFFAC 8, Federal Financial Reporting)

2017년 9월 22일에 미국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는 SFFAC 8, ‘연방재무보고’를 발표했다.

SFFAC 8는 사용자의 필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SFFAC 1, ‘연방재무보고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GAAP이 요구하는 정보(재무제표)와 기타 보고되는 재무/비재무적 정보(필수보충정보)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Showalter FASAB 위원장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인지 및 설명은 향후 위원회의 심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점진적인 발판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정보의 종류, 정부의 운영성과, 수탁책임, 예산통합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fasab.gov/wp-content/uploads/2017/09/sffac_8_nr.pdf

2) 연방재무회계기준서 53, ‘예산과 발생주의간의 차이조정’ 발표 (SFFAS 53, Budget and Accrual Reconciliation)

2017년 10월 27일에 미국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는 SFFAS 53, ‘예산과 발생주의 간의 차이조정’을 발표했다.

SFAAS 53 ‘예산과 발생주의간의 차이조정’은 보고기간 동안 회계실체의 예산상 순지출액과 순운영 원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서이다.

Showalter FASAB 위원장은 “이처럼 새로운 차이조정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순운영원가와 예산상적자를 조정하여 표시하는 정부차원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sffas_53_nr.pdf

7)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는 감사원(GAO), 재무부(Treasury) 및 관리예산처(OMB) 3개 부처가 공동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기구로서 연방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한다.

다.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⁸)

1) 이자비용의 자본화 및 최근 발표문의 이행에 대한 지침 발표

2017년 12월 8일에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는 회계 및 재무보고 지침을 제안하는 2건의 공개초안을 발행했다. 공개초안 중 한 건은 이자비용의 자본화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는 이행지침이다.

이자비용의 자본화(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공개초안, '공사 중 이자비용을 위한 회계처리(Exposure Draft, Accounting for Interest Cost during the Period of Construction)'는 자본자산 및 보고기간 중 발생한 차입비용에 대한 정보의 연관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규정을 제안한다. 또한, 해당 공개초안은 공사 중 발생한 이자비용을 위한 회계처리를 간소화한다.

현재 자원의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재무제표에서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정부 기금 회계 원칙과 부합하도록 계속해서 지출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한 이자비용은 자산의 역사적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 되지 않을 것이다.

이행지침(Implementation Guidance)

이행지침 제안서, 이행지침 업데이트 - 201Y(The Proposed Implementation Guide, Implementation Guidance Update - 201Y)는 GASB가 발표한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다. 이행지침 제안서는 여러 가지 주제, 예를 들면 연금, 기타 퇴직급여, 통계적 선택, 조세 완화에 대한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이행지침 제안서는 이전에 발표된 이행지침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두 건의 공개초안은 GASB 홈페이지(www.gasb.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공개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장된다. 공사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관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2018년 3월 5일까지 제출하고, 이행지침 201Y-X, 이행지침 업데이트 - 201Y,

8)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제·개정하는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관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2018년 2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cid=1176169550280&d=&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

3 국가회계 재무결산 동향

가.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을 대비하여, 2017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강원도 홍천시 대명리조트에서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에는 임동규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장이 참석하여 결산 기간 동안 재무결산 담당자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재무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산담당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10.26.), 강원도 홍천시 대명리조트〉

기획재정부 장시열 사무관은 ‘국가결산보고서 펼쳐보기’라는 주제로 국가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무결산보고서에 대한 관심과 정확하고 신속한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검토 결과’,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추진현황’,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의 3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시스템 개선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도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재무결산 개선 관련 분임토의를 통하여 각 부처 및 회계·기금 결산담당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분임토의 결과는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기획재정부는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과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Ⅳ」를 발간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은 회계·기금 결산용, 「2017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Ⅳ」는 중앙관서 결산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성은 국가결산 개설, 디브레인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이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된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 국가결산 주요 변동 사항 및 유의사항과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결산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3

재정통계 동향

1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OECD는 2017년 11월 『OECD Economic Outlook NO 102』을 통해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총금융부채 정보를 공개하였다.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Net lending/borrowing) 및 총금융부채(Gross financial liabilities)의 비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GDP 대비 %)

구 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t lending/borrowing)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호주	△2.1	△1.5	△2.1	42.1	44.3	46.4
오스트리아	△2.7	△1.0	△1.6	106.6	105.3	106.7
벨기에	△3.1	△2.5	△2.5	129.9	126.9	127.5
캐나다	△0.0	△1.1	△1.9	92.3	98.4	99.1
체코	△1.9	△0.6	0.7	56.9	53.5	49.1
덴마크	1.1	△1.5	△0.4	58.9	54.2	52.8
에스토니아	0.7	0.1	△0.3	14.1	13.0	13.1
핀란드	△3.2	△2.7	△1.7	71.4	74.5	75.4
프랑스	△3.9	△3.6	△3.4	119.7	120.4	123.3
독일	0.3	0.6	0.8	83.3	79.0	76.3
그리스	△3.6	△5.7	0.5	182.4	183.3	189.5
헝가리	△2.7	△2.0	△1.9	98.8	97.5	97.4
아이슬란드	△0.1	△0.8	12.6	79.5	72.5	66.4
아일랜드	△3.7	△1.9	△0.7	123.3	90.5	88.3
이스라엘	△3.3	△2.1	△2.1	66.1	64.1	62.3
이탈리아	△3.0	△2.6	△2.5	158.4	158.9	157.3
일본	△5.4	△3.5	△4.6	214.5	214.7	217.7
한국 ¹⁾	1.3	1.4	2.1	41.8	43.2	43.8
라트비아	△1.2	△1.2	0.0	47.0	42.0	46.0

구 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t lending/borrowing)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룩셈부르크	1.3	1.4	1.6	29.3	29.0	27.7
네덜란드	△2.3	△2.1	0.4	81.2	77.5	75.3
뉴질랜드	0.3	△0.0	△0.0	40.7	40.7	38.4
노르웨이	8.7	6.1	4.0	33.3	38.9	42.8
폴란드	△3.6	△2.6	△2.5	70.0	69.3	71.9
포르투갈	△7.2	△4.4	△2.0	153.0	150.6	147.7
슬로바키아 공화국	△2.7	△2.7	△2.2	60.6	59.3	59.1
슬로베니아	△5.3	△2.9	△1.9	99.3	102.5	97.2
스페인	△6.0	△5.3	△4.5	118.4	116.4	116.6
스웨덴	△1.6	0.2	1.1	56.4	54.2	52.4
스위스	△0.2	0.6	0.3	45.3	44.8	44.4
영국	△5.7	△4.3	△3.3	112.5	111.7	121.9
미국	△5.0	△4.3	△5.0	104.8	105.0	106.9
OECD-평균	△3.5	△2.9	△3.0	111.7	111.4	112.7

주: 1) 한국의 경우 총금융부채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7.12.28.)에서 D2(일반정부 부채)를 활용함
출처: stats.oecd.org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1%로 전기(1.4%)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OECD 전체평균 △3.0%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금융부채는 2016년 GDP 대비 43.8%로 OECD 전체평균 112.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2016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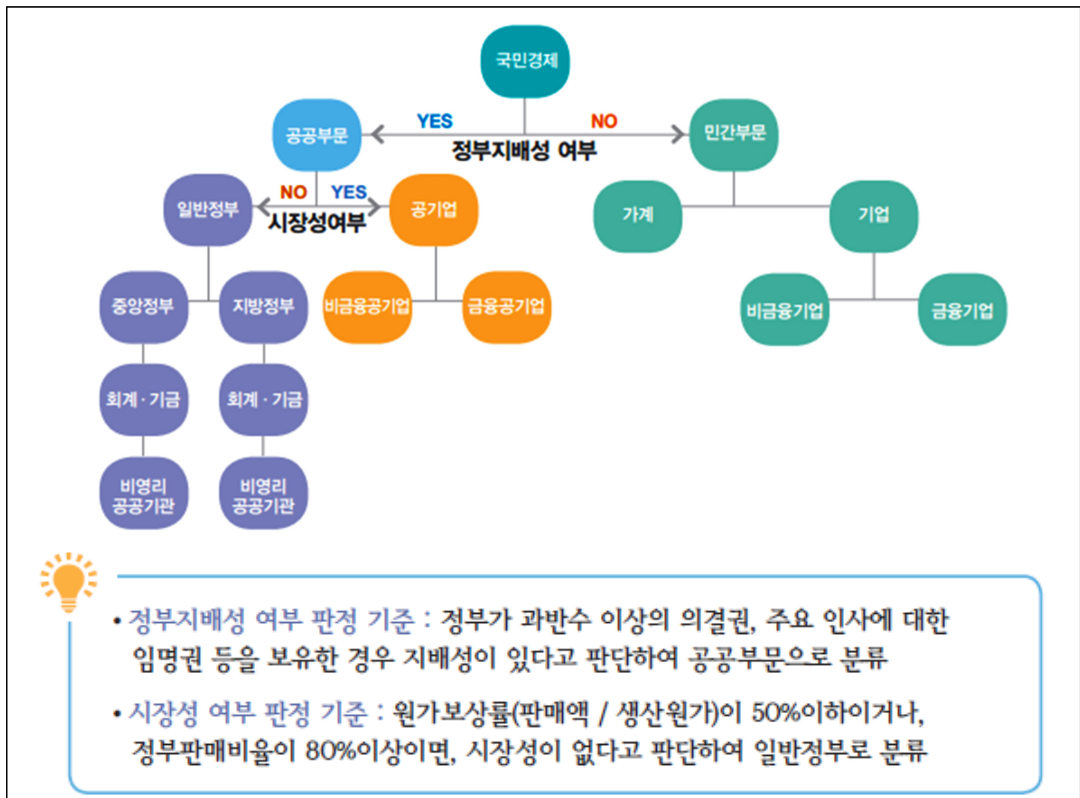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8일(목)에 발표한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부문 Decision tree〉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72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07개 기관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65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13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66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금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036.6조원(GDP 대비 63.3%)으로 전년 대비 33.0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0.9%p 감소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GDP 대비 43.8%)으로, 전년(676.2조원) 대비 41.3조원, GDP 대비 0.6%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4조원(GDP 대비 23.6%)으로 전년(398.9조원) 대비 12.5조원, GDP 대비 1.9%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1,003.5	64.2	1,036.6	63.3	33.0	△0.9
A. 일반정부 부채 (a+b-c)	676.2	43.2	717.5	43.8	41.3	0.6
a. 중앙정부	620.5	39.7	661.2	40.4	40.7	0.7
b. 지방정부	65.0	4.2	66.8	4.1	1.8	△0.1
c. 내부거래	9.3	0.6	10.5	0.6	1.2	0.0
B. 비금융공기업 부채(a+b-c)	398.9	25.5	386.4	23.6	△12.5	△1.9
a. 중앙 공기업	358.2	22.9	350.9	21.4	△7.3	△1.5
b. 지방 공기업	47.7	3.1	43.6	2.7	△4.1	△0.4
c. 내부거래	7.0	0.4	8.1	0.5	1.1	0.1
C. 내부거래	71.6	4.6	67.4	4.1	△4.2	△0.5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7.12.28.)」

2) 부채 항목별 현황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753.8조원, 차입금 113.2조원, 기타 미지급금 169.6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채무증권으로 전년 대비 20.7조원 증가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재정수지 적자 등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 증가(33.9조원)에 기인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채무증권	733.1	(73.0)	753.8	(72.6)	20.7	(△0.4)
• 차입금	109.5	(11.0)	113.2	(11.0)	3.7	(0.0)
• 기타 미지급금	161.0	(16.0)	169.6	(16.4)	8.6	(0.4)
합 계	1,003.5	(100.0)	1,036.6	(100.0)	33.0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7.12.28.)」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40.7조원, 1.8조원 증가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가 증가(1.2조원)하여 전년 대비 41.3조원 증가한 717.5조원(GDP 대비 43.8%)으로 GDP 대비 0.6%p 증가하였다.

가) 중앙정부 부채

2016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620.5조원(GDP 대비 39.7%) 대비 40.7조원이 증가한 661.2조원(GDP 대비 40.4%)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중앙정부	620.5	39.7	661.2	40.4	40.7	0.7
• 회계·기금	579.2	37.0	620.7	37.9	41.5	0.9
• 비영리기관	52.8	3.4	52.6	3.2	△0.2	△0.2
• 내부거래	△11.5	△0.7	△12.1	△0.7	△0.6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7.12.28.)」

① 중앙회계·기금

2016 회계연도의 중앙회계·기금은 전년 579.2조원(GDP 대비 37.0%) 대비 41.5조원이 증가한 620.7조원(GDP 대비 37.9%)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분석된다.

(채무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발행한 공채가 3.2조원 감소 하였으나,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33.9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 국채	556.9	595.0	38.1
• 국고채	490.5	524.3	33.9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1	6.7	△0.4
• 국민주택채권	59.3	64.0	4.7
◆ 공채	28.8	25.6	△3.2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4.7	12.6	△2.1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4.1	13.0	△1.1
◆ 자기 국·공채	△109.3	△111.8	△2.5

출처: 『2016회계연도 기금별 결산보고서』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금액 및 BTL 미지급금*이 전년 대비 각각 6.8조원, 0.1조원 증가하였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한 일반 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금액

(단위: 조원)

	2015년(A)	2016년(B)	증감(B-A)
◆ 청약저축	53.1	59.9	6.8
◆ BTL 미지급금	7.5	7.6	0.1

출처: 2016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② 비영리공공기관

2016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기관은 전년 52.8조원(GDP 대비 3.4%) 대비 0.2조원이 감소한 52.6조원(GDP 대비 3.2%)으로 산출되었다.

(채무증권)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자산으로 예특채를 상환하여 금융부채가 감소(△1.6조원)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은 전기 대비 학자금대출 등 대출금 감소로 대출재원 조달을 위한 사채가 감소(△0.1조원)하는 등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하였다.

(기타) '16년 원가보상률 검토 결과, 비금융공기업에서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재분류(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되는 등 전기 대비 1.4조원 증가하였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16 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65.0조원(GDP 대비 4.2%) 대비 1.8조원이 증가한 66.8조원(GDP 대비 4.1%)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65.0	4.2	66.8	4.1	1.8	△0.1
• 회계·기금	65.4	4.2	67.7	4.1	2.3	△0.1
• 비영리기관	1.0	0.1	1.0	0.1	0.0	0.0
• 내부거래	△1.4	△0.1	△2.0	△0.1	△0.6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7.12.28.)」

① 지방회계·기금

2016 회계연도의 지방회계·기금은 전년 65.4조원(GDP 대비 4.2%) 대비 2.3조원이 증가한 67.7조원(GDP 대비 4.1%)으로 산출되었으며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A. 자치단체

전년 47.5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한 47.8조원으로 차입금이 전기 대비 0.9조원 감소(중앙정부에 대한 차입금 △0.3조원)하였고, 지방채 잔액이 감소(0.4조원)하였으며 선수금(0.8조원) 및 일반 미지급금(0.3조원)이 증가하여 부채가 전기(47.5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1.0조원), 부산(0.3조원)이 증가하였고, 경남(△0.5조원), 전북(△0.2조원), 제주도(△0.1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B. 교육자치단체

전년 17.9조원 대비 2.0조원 증가한 19.9조원으로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증가(1.4조원)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다.

②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1.0조원 대비 증감내역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398.9조원(GDP 대비 25.5%) 대비 12.5조원 감소한 386.4조원(GDP 대비 23.6%)으로 집계되었다. 중앙(△7.3조원) 및 지방(△4.1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부채 감축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3.7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2.4조원), 한국가스공사(△1.6조원) 등의 부채 감소로 7.3조원 감소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도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 등에 따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경기도시공사(△1.4조원), 서울주택도시공사(△0.8조원), 인천도시공사(△0.4조원) 등 대부분의 기관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4.1조원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5년(B)		2016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비금융공기업 부채	398.9	25.5	386.4	23.6	△12.5	△1.9
• 중앙 비금융공기업	358.2	22.9	350.9	21.4	△7.3	△1.5
• 지방 비금융공기업	47.7	3.1	43.6	2.7	△4.1	△0.4
• 내부거래	△7.0	△0.4	△8.1	△0.5	△1.1	△0.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7.12.28.)」

(채무증권) 중앙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순이익 및 여유자금의 증가로 인한 금융부채의 상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5.5조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4.9조원) 등 전기 대비 8.7조원 감소하였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도 경기도시공사(△1.7조원), 서울주택도시공사(△0.2조원), 부산도시공사(△0.1조원)의 사채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2.5조원 감소하였다.

(차입금) 중앙 비금융공기업에서는 한국가스공사(△1.4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조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0.7조원) 등의 차입금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4.0조원 감소하였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도 인천도시공사(△0.3조원) 등의 차입금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1.0조원 감소하였다.

3) 추세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규모 및 GDP 대비 비율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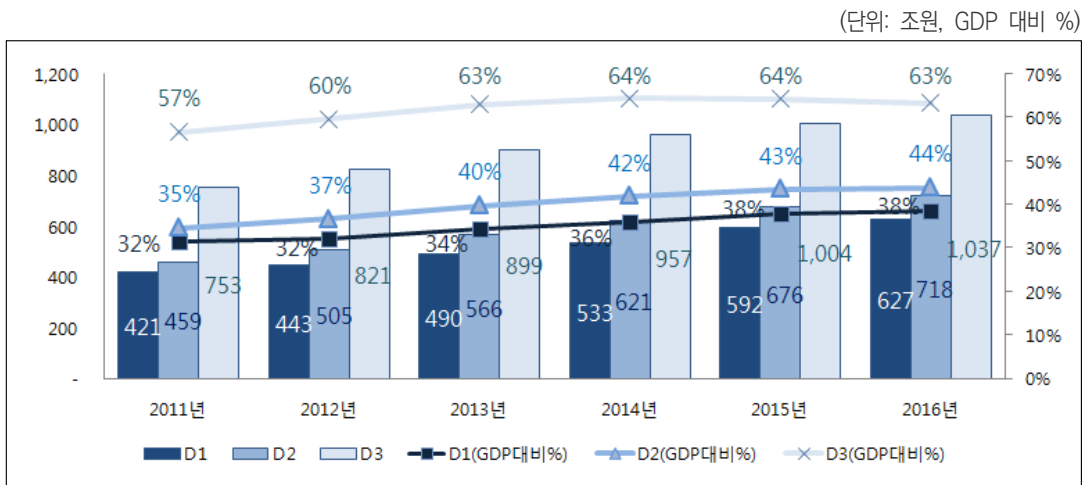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 ('13년) 2%p → ('14년) 2%p → ('15년) 2%p → ('16년) 0%p

일반정부부채(D2) : ('13년) 3%p → ('14년) 2%p → ('15년) 1%p → ('16년) 1%p

공공부문부채(D3) : ('13년) 3%p → ('14년) 2%p → ('15년) △0%p → ('16년) △1%p

〈부채 유형별(D1, D2, D3)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편집

라. 국제 비교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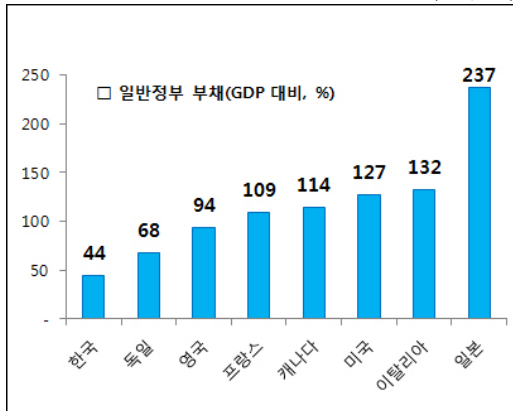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2016년 GDP 대비 43.8%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여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부문 부채(D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35%)으로 금년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규모가 감소(12.5조원)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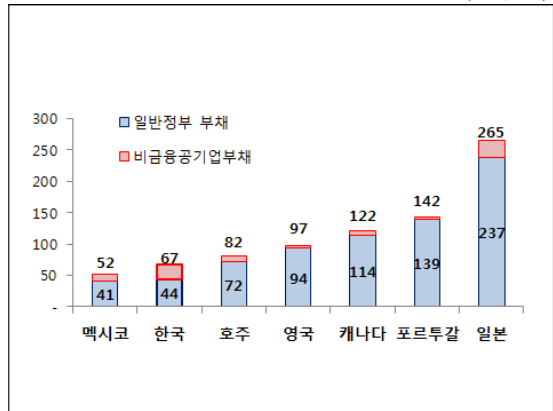
〈일반정부 부채(D2) 주요국 현황〉

(단위: %)



〈공공부문 부채(D3) 산출국 현황*〉

(단위: %)



주: 공공부문 부채(D3)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통계(OECD)로, 한국의 경우 내부거래 제거시 63.3%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7.12.28.)」

한편, 매년 작성된 공공부분 부채는 OECD에 제출되어, OECD Statistics에 공시되고 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Stat**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

Transaction: Total gross debt
Sector: General government
Measure: Current prices, annual levels
Adjusted: Not seasonally adjusted

		Q1-2014	Q2-2014	Q3-2014	Q4-2014	Q1-2015
Denmark	Danish krone, millions	976 460.4	993 767.1	1 028 367.3	1 028 195.4	1 025 059.7
Estonia	Euro, Millions	2 714.5	2 807.1	2 817.3	2 776.4	2 708.7
Finland	Euro, Millions	129 909.0	133 122.0	130 899.0	134 832.0	139 048.0
France	Euro, Millions	2 253 366.2	2 297 549.4	2 312 638.1	2 284 209.3	2 340 719.8
Germany	Euro, Millions	2 175 882.8	2 182 423.4	2 183 711.8	2 186 954.0	2 192 594.0
Greece	Euro, Millions	320 015.0	322 098.0	319 217.0	319 726.0	303 405.0
Hungary	Forint, Millions	25 231 666.0	25 780 156.0	25 487 112.0	24 994 214.0	25 498 229.0
Iceland	Iceland Krona, Millions
Ireland	Euro, Millions	223 203.7	217 703.4	216 449.4	212 201.4	212 536.3
Israel	New Israeli Sheqel, Millions
Italy	Euro, Millions	2 121 633.5	2 169 846.8	2 135 710.4	2 137 315.5	2 187 141.1
Japan	Yen, Millions	1 179 407 400.0	1 200 092 600.0	1 202 583 500.0	1 215 999 300.0	1 228 766 200.0
Korea	Won, Millions	620 571 000.0	..

출처: OECD.Stat

04

특집

1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위탁한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17. 9. 2. ~ 12. 18., 연구자: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박성환 교수(한밭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이아영 교수(강원대))의 연구가 최종 완료되었다. 이 연구는 국가회계기준을 보다 중립적이고 일관되게 제·개정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회계 개념체계(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가.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의 필요성

2007년 이후 「국가회계법」을 시작으로 국가회계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제·개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무보고의 목적, 정보 이용자에 대한 정의, 정보의 질적 특성, 국가회계실체 및 보고실체, 정보의 표시 등과 관련된 개념의 부재로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념체계는 그 자체가 회계기준은 아니지만 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 해석하는 경우에 준거기준이 되며 논리적 근거 및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해외 국가들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회계기준과 함께 개념체계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5개국 중 확인 불가능한 4개국을 제외하면, 개념체계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폴란드 3개국에 불과하다.

〈표〉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회계기준 및 개념체계 현황

구분	No.	국가명	회계기준 및 개념체계		
			제정기구	회계기준	개념체계
IPSAS (11)	1	스위스	확인 불가	IPSAS	IPSAS
	2	스페인	재무부	IPSAS	IPSAS
	3	오스트리아	재무부/감사원	IPSAS 준용	IPSAS
	4	이스라엘	확인 불가	IPSAS	IPSAS
	5	아이슬란드	재무부	IPSAS 준용	IPSAS
	6	에스토니아	재무부	IPSAS	IPSAS
	7	슬로바키아	확인 불가	IPSAS	IPSAS
	8	터키	Public Accountnig Standard Board	IPSAS 준용	IPSAS
	9	일본	확인 불가	IPSAS	IPSAS
	10	칠레	확인 불가	IPSAS 준용	IPSAS
	11	라트비아	재무성	IPSAS	IPSAS
IFRS (3)	12	영국(연방)	재무성(자문: FRAB)	IFRS(FReM)	IFRS
		영국(지방)	재무성(자문: FRAB)	IFRS(SORP)	IFRS
	13	뉴질랜드	NZASB	NZ IFRS	NZ IFRS
	14	호주	AASB	AASB Standards	AASB CF
자국 기준 (8)	15	미국(연방)	FASAB	SFFAS	SFFAC
		미국(지방)	GASB	SGAS	GACS
	16	캐나다	PSAB	PSAS	PSAS
	17	프랑스	재무부/내무부(자문: CNOCP)	정부회계기준(부령)	CFPA
	18	스웨덴 (중앙)	재무부	예산법 10장 (Ordinance on the Annual Reports and Budget Documentation and Bookkeeping Ordinance)	없음
		스웨덴 (지방)	Swedish Council for Municipal Accounting	Municipal Accounting Act	없음
	19	폴란드	재무부	Polish Public Sector GAAP	없음
확인 불가	20	핀란드 (중앙)	재무부	Budget Law and Decree / Manual of Accounting	자국
		핀란드 (지방)	재무부/Accounting Board and Sub-committee for local governments (자문: AFLA)	Local Government Act	자국
	21	한국(중앙)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가회계기준(부령)	없음
	한국(지방)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지방회계기준(부령)	없음	
확인 불가	22	덴마크	확인 불가	헌법 47조	확인 불가
	23	벨기에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24	체코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25	헝가리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출처: 각국 정부 및 기준제정기구 홈페이지 제공정보 참고하여 직접 작성

<약어정리>

FReM: Financial Reporting Manual (영국)

FRAB: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Board (영국)

SORP: 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영국)

ERB: External Reporting Board (뉴질랜드)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호주)

AASB CF: AASB Conceptual Framework(호주)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미연방)

SFFAS: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미연방)

SFFAC: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미연방)

GASB: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지방)

SGAS: Statements of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미지방)

PSA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s (캐나다)

PSAS: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캐나다)

CFPA: Conceptual Framework for Public Accounts (프랑스)

CNOCP: Conseil De Normalisation Des Comptes Publics (프랑스)

AFLA: Association of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핀란드)

나. IPSASB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

해외사례 중 가장 표준적 모형으로 판단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회계예규) 체계에서 발견되는 개념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PSASB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비교

구분	IPSASB 개념체계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공공부문 회계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체계는 국가회계기준이 아니며 특정 국가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고 회계기준과 재무제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제정 기구를 도와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며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목적을 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책임성 판단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그 목적은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의 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을 위한 정보 공시를 실체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자원 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된다고 언급하고 주 정보이용자로 서비스 이용자(국민), 그들의 대리인과 자원 제공자(납세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으로 제시함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재무보고의 목적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속성이라고 명시함. 그리고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이해가능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을 나열하고 각 특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제약요소로 중요성, 원가-효익 그리고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을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는 질적 특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와 「국가회계기준」 제4조(일반원칙)에서 국가회계 재무정보는 신뢰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기간별 비교가능성, 경제적 실질 증시, 목적적합성 등을 갖추어야 함을 언급함. 하지만 각각의 질적 특성에 대한 개념설명이 없으며 정보의 제약요소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음
보고실체	공공부문 보고실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 프로그램 또는 식별 가능한 활동임을 명시함. 그리고 보고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실체의 정의 및 보고실체의 핵심적인 특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다만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에

구분	IPSASB 개념체계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
	체의 2가지 핵심적 특징으로 1)보고실체는 구성원들로부터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구성원들이 혜택을 얻도록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2)서비스 이용자와 자원제공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회계책임 평가나 의사결정 목적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서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앙관서 및 국가를 보고실체로 규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한편 「국가회계기준」 제2조(정의)의 ①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국가회계실체로 정의하여 실체에 대한 구분은 명시됨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제표 요소로 자산, 부채, 순재정상태, 기타 자원 및 의무, 수익과 비용, 차익과 차손을 제시하고, 추가로 정부부문의 소유주출연 및 소유주배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재무제표 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측정	측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을 제시함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에서 자산을 취득원가로 측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자산별 측정기준을 명시함. 부채의 경우도 만기상환가액 측정원칙을 제시하고(제41조), 개별 부채 측정기준을 명시함.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은 IFRS로 단일화되었으며 공공부문도 국제적 정합성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예상되며, 공공부문에서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의 제고는 국가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CNOCP)⁹⁾에서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발표한 공공회계에 대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Public Accounts)도 IPSASB 개념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개념체계 도입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회계 개념체계는 근본적으로 IPSAS 개념체계를 근간으로 하되 프랑스의 공공회계에 대한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념체계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9) CONSEIL DE NORMALISATION DES COMPTES PUBLICS

다.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목차 및 구성		주요 내용
서문	개념체계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실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작성·표시에 사용될 실무지침서(예규)를 발전시키는 데 적용되는 개념을 정립
	개념체계 수립과정에서 고려한 공공부문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환 거래의 규모와 재정적 중요성 승인 예산의 중요성 국가회계실체 프로그램의 성격 및 국가회계실체의 지속가능성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과 부채의 성격 및 목적 국가회계실체의 규제적 역할
1장.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	개념체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회계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뒷받침하는 개념을 정립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개발의 기초제공
	개념체계의 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체계는 국가회계기준이 아니며, 특정 국가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음
	일반목적재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자신의 특정 정보요구에 맞는 재무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없는 다수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무보고서 국가회계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와 재무제표를 보완, 보충하고 가치를 제고시키는 정정보로 구성
	개념체계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체계는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적용
2장. 일반목적재무 보고서의 목적과 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이용자(국민)와 그들의 대리인, 자원 제공자(납세자)와 그들의 대리인
	재무보고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들의 회계책임 평가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실체의 정보 제공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책임) 자원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고책임 (의사결정) 입법기구의 예산 승인, 투표·견의를 통한 영향
	서비스 이용자와 자원 제공자의 정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기간 동안 실체의 성과 실체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장기간 동안 실체의 서비스 제공과 기타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구통계나 국내의 경제여건에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정보: 재정상태, 재정성과, 현금흐름 정보 재무제표를 보강·보완·보충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정보와 법규 또는 다른 감독기관 요구 준수 - 서비스 제공 활동, 목표 달성 성과 - 미래 전망과 관련된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

3장. 보고실체	국가회계실체와 국가회계보고실체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실체)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식별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실체로 국가, 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회계단위 등 포함 • (국가회계보고실체)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불특정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통적인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체
	보고실체의 주요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경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의 존재가 중요하며 이들의 정보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실체들의 재무제표를 합하여 정보 제공 가능 • 또한 정보이용자가 요구한다면 프로그램 또는 식별가능한 활동 단위로도 정보 제공 가능
4장. 질적 특성	정보의 질적 특성	• 목적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정보의 포괄적 제약 요소	• 중요성, 원가 대비 효익, 질적 특성 간의 균형
5장.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중요성	• 구성요소는 경제적 정보와 활동을 보고, 분류, 종합하는 출발점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재정운영결과
6장.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이란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적절한 계정과목 및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 • 인식은 구성요소의 존재 및 측정 관련 불확실성 평가 포함
	인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를 충족 •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을 달성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제약요인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측정 가능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는 보고일 이후 변동이 발생하여 과거 재무제표에 인식된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평가하고, 정당한 변동이 발생했다면 그 항목을 제거하는 과정 • 제거 시 구성요소의 존재에 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최초 인식 시 사용했던 기준과 동일
7장. 재무제표 자산과 부채의 측정	측정의 목적	• 실체의 서비스 원가, 운영능력, 재무능력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측정기준을 선택하는 것
	측정기준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체계 단계에서 측정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는 단일의 측정기준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 • 개념체계는 측정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의 선택에 대한 지침 제공
	자산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인식) 역사적 원가 • (보고시 측정) 시장가치, 대체원가, 순판매가격, 사용가치
	부채의 측정기준	• 역사적 원가, 이행원가, 시장가치, 해제원가, 인수가격

8장. 일반목적재무 보고서의 표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내 정보의 선택, 위치 및 조직화 정보의 선택, 위치 및 조직화는 경제현상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따라 결정
	재무제표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 포함 주석은 재무제표의 한 부분 주석에 공시되는 정보는 (1) 이용자의 재무제표 이해에 필수적이며, (2) 실체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3)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본문에 배열된 정보와 명확하고 명백한 관계를 가짐

05

센터 동향

1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제 22차 국가회계 자문위원회를 12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 아태재정협력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 개정 추진 경과’를 보고 하였고, ‘국가회계, 제2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국가회계, 제2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 체계의 구축과 연동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서 국가회계의 비중 확대 및 국가회계 전문교육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등 해외 기구들과의 국제사업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2018년 업무추진 계획 및 중장기 업무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2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가회계기준의 개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위탁연구용역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의 중간보고회가 10월 20일에 한국재정정보원 19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위탁과제는 국가회계기준을 보다 일관성 있게 제·개정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박성환 교수(한밭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이아영 교수(강원대)를 통해 지난 9월 초부터 추진되어 왔다.

연구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는 현행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체계 역할의 규정들을 분석하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정부의 공공부문 회계기준 개념체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중간보고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개념체계의 부재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회계기준의 현행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제정 필요성을 보강하고 일반목적재무보고서, 회계실체와 보고실체, 재무제표 구성요소 등 주요 개념을 명확히 할 것과 주요 용어에 대한 표현을 일치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중간보고회(10.20.), 한국재정정보원 19층 회의실〉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의 최종보고는 12월 14일에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루어졌다(“06. 세미나” 참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표는 박성환 교수(한밭대)가 맡았으며, 권선국 교수(경북대)와 안성운 교수(카톨릭대), 이경섭 전 감사원 국장이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담당하였다. 토론자들은 보고실체의 범위와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적용 대상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비교환거래로 인한 부채 인식, 순원가정보 등 국가 특유의 회계개념에 대해 추가로 연구해야 하며, 국가회계 개념체계를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회계 개념체계를 2021년까지 제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개념체계 제정(안)에 관한 내용은 “04. 특집 「국가회계개념체계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p.38)”를 참조하기 바란다.

3 국가·지자체 회계 발전방안 간담회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센터와 함께 「국가·지자체 회계 발전방안 간담회」를 11월 13일에 한국재정정보원 19층 회의실에서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두 제도 간의 정보 교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과 국가·지자체 회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 간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지자체 회계 발전방안 간담회」는 국가회계, 지자체 회계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교류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발제된 안건을 바탕으로 '16년도 국가결산 개요 및 지자체 회계제도 개요, 지방회계통계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회계제도 및 기준 비교를 통한 두 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국가·지자체 재무정보 활용 확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인회계사와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회계학' 과목에서 '정부회계' 비중 확대(현재 10%)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8년 1~2월 중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 원가정보 활용현장 방문 추진, 센터 간 공동 연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4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해 ‘국가회계 5주년 성과와 과제 -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세미나 기념으로 발간한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6』에 이어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을 발간하였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등 다섯 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국가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별첨에서는 2016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와 국가회계 실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은 최신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2017년도에 수행한 수탁과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 및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회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 국가 결산 과정 등의 설명을 보완하였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7』이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국가회계 기초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배포는 2018년 1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5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은 제1차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를 12월 14일(목) 대우재단빌딩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는 재정통계 관련 정부, 유관기관 및 회계, 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에서는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이 재정통계팀 관련 업무를 보고하고,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운영방안', 'GFSM 2014 도입 방안 및 쟁점'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12.14.), 대우재단빌딩 중회의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 제외 9명으로, 기획재정부 고종안 과장, 한국은행 박영환 팀장, 목원대 권혁대 교수, 한밭대 박성환 교수, 성신회계법인 김상노 이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정규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센터장 및 하세정 팀장, IMF Economist Philip Stokoe이다. 이번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신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21일(목)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17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2개)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16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 e-나라도움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정부정보조금 회계처리 변동사항 등 주요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해 본원 유명찬 회계사의 강의가 이뤄졌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실무 관련 질의 응답도 진행되었다.



7 센터위탁과제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탁과제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수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비교 연구」와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 분석」이란 주제로 박성환 교수(한밭대)와 김종현 (한양대) 교수가 각각 최종보고를 하였다. 정도진 소장의 사회로 2017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 세션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한국회계학회 회원들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가. 개요

- 제목 :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수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진: 박성환(한밭대), 이아영(강원대), 남혜정(동국대)
- 2.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 분석
연구진: 김종현(한양대), 장석진(대진대)
- 일시 : 2017.12.16.(토)
- 장소 : 동국대학교 경영관 MBA205

나. 최종보고 요약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수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비교연구

현금주의 조세수익은 조세의 현금납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측정의 객관성은 확보되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과세의무가 발생된 이후 연도에 조세가 수납되므로, 조세부담률 산식에서 연도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특정 연도의 조세부담률의 해석이나 미래 재정전망 등에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16년 조세부담률은 19.4%로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조세정책 및 경제상황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2015년 경제활동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결과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부담률(또는 2016년도 세수액)로 2016년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래 세수 예측 측면에서 현금주의 조세정보는 경제활동의 시차와 대응의 문제가 있어 발생

주의 조세정보보다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금주의 조세수익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부담률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장기 재정전망의 유효한 예측을 위해 발생주의 조세수익 정보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비용은 현금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납부액 및 법인세부담액 그리고 실제 법인세수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라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법인세수는 현금주의 측정치로 본 연구의 법인세납부액 및 법인세부담액과 유사한 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발생주의의 우월성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거래를 인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측정된 법인세수는 경제적 사건과 인식기간이 일치되어 경제상황이나 제도의 변화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세수익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법인세 정보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발생주의 법인세 정보가 경제상황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발생주의 법인세 정보가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데 의미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로 측정한 법인세비용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더 잘 포착하여 경기가 좋을 때 높은 비용을 기록하고 경기가 나쁠 때 낮은 비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금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납부액과 법인세부담액은 경기와 무관하거나 전기의 경제상황을 당기에 반영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발생주의 법인세가 경제상황이나 제도변화를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측정치임을 제시하는 결과다.

둘째, 당기 법인세비용, 법인세납부액, 법인세부담액 중에서 평균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이 차년도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낮은 예측오차를 나타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차년도 법인세수의 예측에 당해연도의 법인세비용 정보가 차년도의 법인세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법인세비용 정보가 현금주의에 가까운 법인세부담액이나 법인세납부액에 비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 분석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를 전면 도입하여 2년간의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친 후, 2011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발생주의 관점에서의 국가회계 전환은 보다 합리적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적시에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주의 관점에서 작성된 국가재무정보는 국제금융시장과 국가신용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생주의 관점에서 측정된 국가의 재정수지(순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와 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가 국채수익률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OECD에 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IMF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활용한다. 국채는 국가의 주요한 자본조달 수단이며, 국채 수익률은 민간에서 무위험수익률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생주의로 측정한 재정수지는 국가의 위험요인(risk factor)을 낮추어 국채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국가부채는 국가의 위험요인을 높임으로써 국채수익률을 높이고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예상과 일관되게 국가의 재정수지는 국채수익률을 낮추고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생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은 모두 국채수익률(국가신용등급)에 음(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재정수지가 건전할수록 국가의 위험이 낮아짐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고 국채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부채는 국채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국가신용등급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는 국제금융시장과 국가신용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의를 가지며 국가부채수준과 재정수지가 재정위험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06 세미나

1 육군본부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

육군본부에서 개최한 ‘2017년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 참석하여 ‘국가 재무정보의 활용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함

가. 개요

1. 일시 : '17.11.2.(목) 13:30~15:00
2. 장소 : 대전, 계룡스타텔 무궁화홀
3. 주최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홍성범 중령(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발표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향
(이용안,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서기관)

[발표 2] 국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현황 및 과제
(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회계사))

[발표 3] 자원관리부채 재정정보 활용성 증대방향
(임경국, 국방부 재정회계과 중령)

[발표 4] 전략적 정보제공을 위한 재정정보의 분석과 활용
(김종태, 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장)

나. 발표요약

- 국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현황 및 과제(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센터 연구과제)

「국가 재무정보 활용현황 및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수탁과제(17.3.6~8.2, 5개월)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국가수준의 재무정보 활용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한소영 전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발생주의를 도입한 선진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재무정보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 지표 개발, 성과평가 활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무정보 수준의 세분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 발표를 기회로 육군본부는 향후 재무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실적 및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제의하여 2018년에는 협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육군본부 '2017년 재정정보 발전방안 세미나'(11.2.), 계룡스파텔 무궁화홀〉

2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7년 11월 3일(금)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원고는 공청회에서 발표 및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가. 개요

1. 주제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2. 일시 : 2017.11.3. (금) 14:00~16:00
3. 장소 :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4.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제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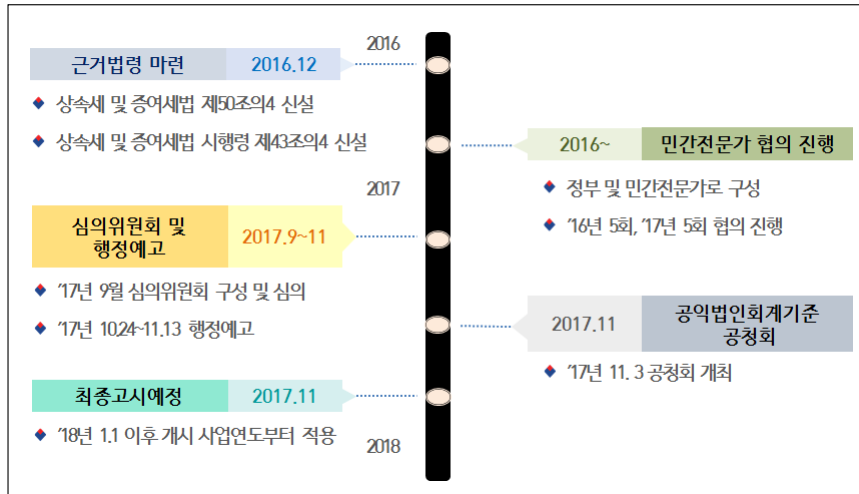
1)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요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는 있으나 관련 회계기준은 없었음
-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익법인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과정(그림 참고)

-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법령 마련함
-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준 제정 TF를 구성하여 기준안 마련
-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기준안 확정
- 2017년 10월 공익법인회계기준 행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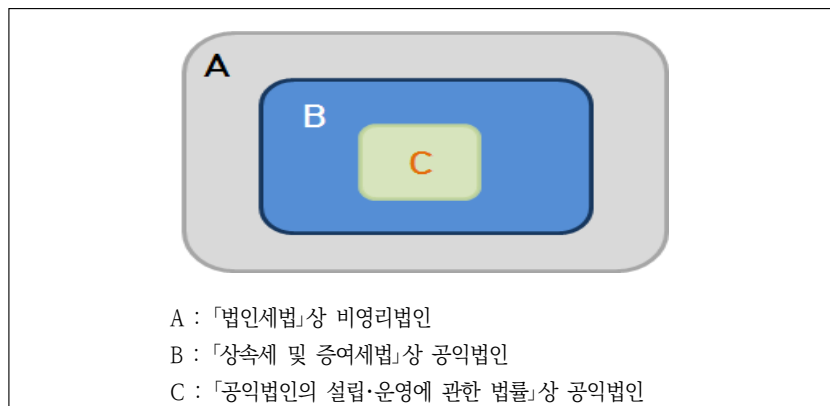


2)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그림 참고)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다 좁은 범위로 공익법인을 규정함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그림의 'B'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의무적용대상임
-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
- 201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34,743개이며, 이 중 의무공시 대상은 8,585개

2016년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	합계
신고단체수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34,743
의무공시	-	2,068	1,614	2,214	517	969	1,203	8,585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2016한국공익법인연감』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 (기준서상 제외) 공익법인회계기준안 제4조 제2항(복식부기) 및 제3항(발생주의)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총칙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됨
 -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제외하여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완화
 - 순자산변동 내역에 대해 주석 공시
-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함

□ 재무상태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제 혜택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부채 인식이 가능하도록 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 표시
- (순자산의 구분) 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 기본순자산 :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 순자산조정 : 순자산의 가감성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 운영성과표

- (사업과 사업외의 구분)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수익(비용)을 구분함
 - 수익 및 비용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수익(비용)으로 구분
- (사업수익 분류)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기부금 등의 수익인식)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 인식
 -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함
- (사업비용 분류)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고유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표시하여 정보이용자(기부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법인세비용 인식
- 공통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의 배분
 -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합리적인 배분 기준(업무시간,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에 따라 배분
 -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 어떤 자산과 부채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합리적인 배분 기준(시설면적, 사용빈도 등)에 따라 배분

□ 자산·부채의 평가

- (유형자산 재평가)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음
 - 재평가이익의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증가액을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사업외수익으로 인식
 - 재평가손실의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된 경우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 이전에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

-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함
 -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다. 토론 요약

1) “법 적용에 관해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중요함”

김미라(한국 NPO 공동회의 기획분과위원)



현재 주무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기준 및 보고양식을 사용하여 결산 및 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 후, 각 부처에서 동일한 회계기준 및 양식 적용을 통해 실무적으로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충돌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법인은 이 법과 다르게 해석하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한 기관에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한다.

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 또한 필요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채인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실무자들이 부채인식을 할지 신고조정을 할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반드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본순자산으로 표시되는 반면 다른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니라면 보통순자산으로 표시되어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령 조정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양식이 이 기준서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실무담당자의 업무혼선 및 업무 가중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춘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다. 또한 기준안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할 시 국세청 공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 기준안 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자면, 재무제표 양식 중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완화에 대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현금흐름표는 유동성 관리 능력 및 재무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재무제표 이므로 추가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주식에 기금의 잔액관리 명세서가 추가되어야 함을 건의한다. 공익법인회계의 핵심은 기금 관리이므로 기금 및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기부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기부금의 제약 형태(일시적 제약, 영구적 제약)에 대해 수익인식시점부터 구분되어 운영성과표에 변동내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기부자의 의도와 시간상 제약에 따른 일시적, 영구적 제약에 대해 수익인식시 구분되어야 하며, 제약의 해제된 흐름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경우 수익 미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기부물품에 대한 수익 인식 없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금영수증 총발행내역과 기부금 수익 간 불일치에 대한 실무자의 추후 업무 가중이 야기될 수 있어, 국세청 자료와의 차이 소명 업무의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로, 운영성과표의 수익사업을 구분 표시할 때 매출액, 매출원가를 표시하는 것이 정보제공 목적에 보다 유용하다. 현재의 양식을 유지할 경우 하위 항목으로 매출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무형자산상각비의 분류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형자산상각비도 시설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고유목적 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인 경우 사업수익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투자자산이 아닌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경우에도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법의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 필요”

박두준(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해설 및 작성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며,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례 및 내용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수천 개 공익법인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및 원활한 질의응답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적인 해설 및 작성지침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비용의 자의적 조정을 통한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별 비용표시에 대해 경영자의 비용 조정에 대한 예방책 및 세부방법 등이 담겨져야 한다.

국세청 공시양식 또한 기준서 제정에 따라 내년에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법의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 드린다. 과거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법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존재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도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잘 적용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모니터링 및 관심이 필요하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가지는 특징”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그동안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부재로 인해 작성자뿐 아니라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 전문가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회계기본원칙을 준용하려고 했으며 공익법인의 회계 실정을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작성자 측면에서는, 현금흐름표 배제, 운영성과표 양식,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인식 방법, 순자산의 구성 등 증소공익법인의 의견을 많이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주식에서 비용의 기능별, 성격별 구분과 중요 거래정보의 제공은 기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이용자도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서술되어야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마련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세부 규정에 대한 보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계기준이 가져야 할 질적 특징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무지침이나 해설서가 조속히 마련되어 실무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4)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돼야”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회계기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무부처, 규모, 기능 등의 차이로 일관적인 회계기준제정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들의 회계지식수준 차이로 인해 공익법인회계 기준이 중소기업의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완충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집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dBrain처럼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전산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생산자 모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업무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질의회신이나 해설서 작성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작성된 공익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익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인 TF추진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제언한다.

5)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건전한 기부 문화 형성에 첫걸음”

이용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은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투명성, 공익법인의 특수성, 공익법인의 부담 최소화와 같은 3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세부적인 구분의 필요성이 있지만 영세 공익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에 다루지 못하는 점이 존재한다.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므로 제출되는 의견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미진한 내용 및 사업비용 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등은 추후 실무지침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부처에 따라 이원화된 회계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의 관리목적으로 단식 현금주의를 적용하나, 공익법인의 정보 이용자는 기부자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에 대해 부처 간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하나의 부처에서 대답하기는 어렵고, 정부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만,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국세청 공시서식 문제는 회계기준 제정 이후 내년 초 공시서식 개정 예정이며, 영세한 공익법인의 적용 유예도 검토 예정이다.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수익 미인식으로 인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총액과의 차이 발생 문제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시 설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가이드스타 등 민간의 자율적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11.3.), 서울 은행회관2층 국제회의실〉

3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세션 운영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세션'을 운영함

가. 개요

1. 일시 : '17.11.18.(토) 14:30 ~ 15:45
2. 장소 :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701호
3. 주최 : 한국회계정보학회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주제 1: 2018년 국가회계교육사업 추진계획

(현지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 TFT 팀장)

첫 번째 주제인 「2018년 국가회계교육사업 추진계획」은 현지용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TFT)이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2018년부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새로 수행하게 된 국가회계교육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세부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이배 교수(덕성여대)가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용] 2017년까지 민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던 교육사업을 2018년부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출연사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회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사업은 증장기적으로 발생주의 재무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하여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국가회계 전문교육 인증 제도를 통해 재무 결산담당자들은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결산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2018년에는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등 10대 중점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고성삼] 사이버 교육의 수강범위를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회계를 알릴 필요가 있음

[김석웅] 국가회계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교육 학점을 관리하여 일정 학점을 채운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회계 교육 수강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주제 2: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두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은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내용 3가지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이배 교수(덕성여대)가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윤진]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회계기준') 제정배경은 현재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의무는 있으나 관련 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이번 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공익법인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과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경우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정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은 ①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제외하여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를 완화하였다. ②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하였다. ③ 운영성과표는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수행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였다.

[이윤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실무진의 교육 증대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법인이 사업 활동 수행 후 기본 순자산에 편입한 자산에 대해 이후 보통순자산으로 재편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대회(11.18.),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701호〉

4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 발표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함

가. 개요

1. 일시 : '17.12.4.(월) 14:00 ~ 16:00
2. 장소 :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지하 2층)
3.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박윤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발표 1] (연구성과 1) 해외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방안
(이남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발표 2] (연구성과 2)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발표 3] (연구성과 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종합토론] 좌장(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임동규,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팀장)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연구성과 1: 해외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방안 (이남주, 국가회계팀장)

첫 번째 주제인 「해외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수탁과제('17.3.6.~8.2., 5개월)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이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해외 OECD 가입국 중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가집계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갑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주요 정보이용자인 청와대, 국회, 감사원 및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함. 해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 사례에서 각 나라의 관련 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사례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제안한 신규 재정지표 및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세부사업 원가집계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박노옥]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이용 주체 및 용도를 구체화하여야 함

[임동규] 차세대 디브레인 개선이 2~3년 내로 추진될 예정이며, 원가 세분화 수준이 성과평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임. 다만, 원가 세분화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에도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성과평가가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규안] 향후 연구 과정에서 통계 수치를 이용(피어슨·스피어만 상관계수 등)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며, 알기 쉽게 핵심 키워드(효율성 등)를 발표 시 강조할 필요가 있음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12.4),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주제 2: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두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는 2017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 분과에서 수행한 연구로, 김이배 교수(덕성여대)가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정부예산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회계정보의 예산 편성 환류 방안 및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갑순] 국가의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개인의 이윤 추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법규나 제도를 통한 감사원, 국회 등이 규제와 개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부터 공공기관 결산 담당자까지 네트워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노옥] 현재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국면에 있으므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에 대한 활용 의지가 미약하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기반을 구축해 놓으면 5년 정도 후에는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성과관리 및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및 개별 자산에 대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며, 미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등에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발생주의 예산의 경우 해외 실패 사례도 존재하므로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동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현금주의 재무정보와 보완하여 사용하자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재부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처도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산개요상 재정지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임

[전규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별개의 개념으로 이용하려는 시각을 버리고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의 부채비율, 영업이익이익률과 같이 재정건전성 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주제 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세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방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하나로서, 정도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 검증을 위하여 ①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②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③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예측정보의 3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동규] 거시 경제 이슈를 발생주의 회계 측면에서 연구하였다는 데에 공헌점이 있으며, 향후 사업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전규안] 회귀분석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 바람직하며, 발생주의 비용과 현금주의 지출의 차이 부분은 순액이 아닌 개별 항목별로 제시하고 추가 설명 보완이 필요함



<2017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12.4.),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5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동계학술대회 발표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동계학술대회'를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함

가. 개요

1. 일시 : '17.12.14.(목) 13:30 ~ 18:30
2. 장소 :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회의실
3. 주최/후원 :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윤성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부-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

[발표 1]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공시와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이아영,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1]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창훈(인하대학교 교수), 임동완(동국대학교 교수)

[발표 2]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성 증대방향: 국방부 자원관리부대를 중심으로
(남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임경국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토론 2]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남혜정(동국대학교 교수),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제2부- 국가회계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발표 1]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이문영/이지연)

[토론 1] 이장희(충북대학교 교수), 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성시경(단국대학교 교수)

[발표 2]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안)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남혜정, 동국대학교 교수/이아영,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2] 권선국(경북대학교 교수), 안성운(가톨릭대학교 교수), 이경섭(전 감사원)

-제3부- 국가회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토론] 정도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노옥(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심재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정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제1부 :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성

- 주제 1: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공시와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이아영, 강원대학교 교수)

첫 번째 주제인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공시와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이아영 교수(강원대)가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국가 재정운영표의 공시현황을 특정 중앙부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재정운영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정창훈 교수(인하대), 임동완 교수(단국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운영표, 성과보고서를 연계시켜 재정운영보고서에 보고되는 프로그램원가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실한 연구로 생각됨. 또한, 교육부의 용자

사업을 분석하여 용자보조비용과 같은 원가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생각됨. 모든 정부부처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된 성과보고서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성과보고서가 옳은지 재정운영표가 옳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의 집행결과가 세출결산서인데, 세출결산서에서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어떻게 표현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성과보고서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 수와 구조상의 차이를 비교할 때, 자체 문제인지 프로그램 예산구조상의 문제인지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정창훈] 성과부서, 재무결산부서와 예산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음. 3개 부서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 예산서의 프로그램 수와 성과보고서에 프로그램 수가 일치해야 제대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짐.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함

[임동완]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부회계 결산서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세출결산서가 있는데, 세 개의 구조를 어떻게 일치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결산서는 프로그램예산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결산서인데, 프로그램 단위와 재무제표의 원가단위와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 목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함.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가 일치하는지 검토 필요. 발생주의 예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간의 일치 문제부터 검토 필요

[이아영] 성과보고서와 재정운영표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지만, 예산구조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향후 예산구조나 예산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어떤 것을 벤치마크할 것인지 결정할 것임. 우리나라의 예산, 회계, 성과부서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향후 리서치를 할 계획임

□ 주제 2: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성 증대 방향: 국방부 자원관리부대를 중심으로
(임경국,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수료)

두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성 증대 방향: 국방부 자원관리부대를 중심으로」는 임경국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수료)가 국방부 자원관리부대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부대 운영 효율성에 대해 단위부대운영유지비 등의 예시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원희 교수(한경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이남주 팀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혜정] 국방부가 발생주의에 따라 적절하게 인식·측정하여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재무정보가 산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방부의 재정담당자의 회계 정보 중요성 인식을 위한 회계 교육 필요. 국방연구원 홈페이지에 국방예산통계 자료는 현재 2014년까지만 공시되고 있으므로, 시기적절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이남주] 부대의 임무특성별로 어떤 관리의사결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제 가능비용과 통제불가능비용에 대한 가중치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으나 통제불가능 비용은 제외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음. 내년에는 센터에서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육군본부 관리의사결정에 재무정보가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2017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14.),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

제2부 : 국가회계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 주제 1: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첫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는 김이배 교수(덕성여대)가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위탁과제로 수행한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본 주제는 현행 국가회계예규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회계 기준제정기구의 선진화 전략을 검토하여,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장희 교수(충북대), 김동욱 교수(제주대), 성시경 교수(단국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회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국가회계예규(22개) 등이 있음. 그러나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구조적 일관성이 부족하여, 실무적으로 편의성이 떨어짐. 또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미국 연방회계기준(SFFAS), 국제회계기준(IFRS) 등 타회계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제적 정합성이 낮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2개 국가회계예규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과 형식의 정비 및 국제정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안)을 수립함

[이장희] 기준체계를 완성하는 것은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작업과 개념체계까지 완비해야 완성되는 것으로 중요도, 시급성 및 세계적 추세 부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난도가 높고 쟁점사항이 많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질의응답이 많이 발생하는 예규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타 기준을 인용할 시 특정사례로 간단 명료하면서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선진화에 대한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개념 체계와 연결되어 회계제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임

[김동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같이 총질의를 30% 이상 발생하는 지침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지침을 각각 분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함.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3년부터 K-IFRS를 도입하고 있어 국가회계실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공공기관과의 기준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시경] 로드맵 작성 시 국가, 학계 및 현업 담당자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난이도와 시급성을 계량화할 때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제 2: 국가회계 개념체계 재정(안)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두 번째 주제인 「국가회계 개념체계 재정(안)」은 박성환 교수(한밭대)가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일반목적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초(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선국 교수(경북대), 안성윤(가톨릭대), 이경섭(전 감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향후 이들의 제정 및 개정, 해석 시 논리적 근거와 일관성 있는 적용의 근거가 되는 국가회계 개념체계 초안을 마련함. 국가회계개념체계는 서문과 함께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에서는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 적용대상을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과 이용자를 규정함. 제3장에서는 보고 실체를 정의하고 회계실체와 구분하여 보고실체 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제4장에서는 국가회계 재무보고 정보의 질적 특성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식별 및 정의하였음. 제6장은 구성요소의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7장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 제8장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함. 개념체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의 정의, 개념체계의 위상 정립 등 쟁점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되어야 함

[권선국] 국가회계 개념체계는 예산회계에 대한 개념까지 포괄해야 하므로 개념체계 내 구현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개념체계를 정부회계 개념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안성윤] 개념체계 이용자에 대한 정의, 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용어·문장 수정 등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예를 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순원가 정보와 관련된 '재정운영결과'의 개념이 중요하므로 해당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경섭] 비교환거래로 인한 부채 정의, 무형자산(과세권 등), 재정운영결과(순원가정보) 등 국가회계 특유의 회계개념 또는 이용자 관심 대상 주요 개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제3부 : 라운드 테이블-국가회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3부에서는 「국가회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 김경호 교수(홍익대)를 중심으로 정도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노옥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김완섭 심의관(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노옥] 호주의 경우 감가상각비 예산을 사전에 반영하는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였으나 발생주의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낮고 발생주의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함. 발생주의의 활용은 관리유용성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를 제공할 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공급의 질이 낮아짐. 특히 발생주의 정보의 경우 정보제공과 활용이 맞아야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활용성이 제고될 것임.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은 재정사업과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핵심으로 보임. 해석이 필요한 정보는 활용하기 어려움

[심재영] 이용자의 국가회계 정보 활용 유도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 노력이 필요함. 국가회계 정보 공시에 대한 관심 및 환기에 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 전문 실무담당자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기업·국가·지방회계 간 정합성, 재무회계·재정통계 정보 간 통합적 활용, 감사원·국회의 회계정보 활용이 필요함

[이정희] 재정을 관리할 때 회계정보가 총량적인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많음. 정부회계, 재정통계 등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보가 산출되는데 정보가 통합·관리되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함. 정부는 D1, D2, D3, 중앙부처의 결산정보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GDP 대비 D1에 주요한 관심을 가짐. 재정건전성의 책임은 주로 정부부채에 있으나,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 관리가 더 중요하며, 관리 대상을 국가채무에서 국가부채로 옮길 필요가 있음.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경우 D1이 5개년 계획인데, 국가부채관리계획은 어떻게 것인가 고민이 필요함. 우발부채를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 있음. 선진국 중에서 우발부채를 관리하는 국가는 호주이며, 한국도 우발부채를 관리할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예산편성에서 정부부채가 활용되도록 논의할 필요 있음



〈2017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14.),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

6 2017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 발표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함

가. 개요

1. 일시 : '17.12.16.(토) 14:40 ~ 16:10
2. 장소 : 서울 동국대학교 경영관 및 문화관(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3. 주최 : 한국회계학회

〈주제발표〉

[사회] 정도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 1] (연구성과 1)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 활용방안
(진태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발표 2] (연구성과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수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비교연구(위탁과제)
(박성환,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남혜정,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아영, 강원대학교 회계학부 교수)

[발표 3] (연구성과 3)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 분석
(김종현, 한양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장석진,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 발표 요약

□ 발표 1: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 활용방안

(진태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연구원)

첫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 활용방안」은 진태호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이 수행 및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재정지표를 개발하여 재정건전성 지표와 사업지표로 분류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순부채비율’, ‘관리부채비율’, ‘GDP 대비 재정순이익’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지표로는 ‘분야별 원가정보’, ‘SOC 순투자 대비 상각액’, ‘공무원·군인연금 당기원가’를 신규로 개발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서 발표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주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채무비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고, 현행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 등 관리할 수 없는 사회보장성 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어 관리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지표를 본 연구에서 개발 제시함

사업지표의 경우 발생주의 정보가 현금주의 정보보다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SOC, 사회보험, 민간투자 및 용자 등이라 판단하고 정책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만, 자료의 한계와 정보이용자의 활용이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야별 원가’, ‘SOC 순투자 대비 상각액’, ‘공무원·군인연금 당기원가’를 지표로 최종 제시함

이와 더불어 시계열 자료(‘12~’16회계연도)를 제시하고, OECD 국가의 발생주의 도입 국가 중 15개국의 결산보고서를 분석하여 동일한 재정지표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재정지표의 설명력과 이해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였음



〈2017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16.), 동국대학교 경영관〉

□ 발표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수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비교연구(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두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법인세수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비교연구」는 박성환 교수(한밭대)가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발생주의 법인세정보가 경제상황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지 여부와 발생주의 법인세정보가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도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환] 현재 우리나라는 현금주의 조세수익을 조세부담률 등 재정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현금주의 조세수익은 직전연도 경제활동이 수납된 결과이다.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주의 조세수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생주의에 따른 조세수익 정보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발생주의로 측정된 법인세비용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더 잘 포착한다. 이것은 발생주의 법인세가 경제상황이나 제도변화를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측정치임을 제시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당기 법인세비용, 법인세납부액, 법인세부담액 중에서 평균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이 차년도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낮은 예측오차를 나타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차년도 법인세수의 예측에 당해연도의 법인세비용 정보가 차년도의 법인세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나타냈다.

[정도진] 현재 정부에서는 미래 세수를 추계할 때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사결정에 유의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성과다.

□ 발표 3: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 분석(김종현, 한양대학교 교수)

세 번째 주제는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 분석」으로 김종현 교수(한양대)가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발생주의 정보인 국가부채와 재정수지가 국채수익률, 국가신용등급 및 CDS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도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사회를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를 전면 도입하고 2년의 시범 적용기간을 거쳐 2011년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정보가 국가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적시에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가재무정보와 국채수익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발생주의 관점에서 측정된 국가부채(중앙·지방정부 부채+비영리공공기관부채)와 재정수지(순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가 국채수익률, 국가신용등급 및 CDS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가재무제표가 아닌 IMF에서 제공하는 GFSM에 따른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예상과 일관되게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부채는 국가의 위험요인(risk factor)을 높임으로써 국채수익률 및 CDS 스프레드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국가신용등급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의 재정수지인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은 국채수익률(국가신용등급)에 음(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재정이 양호할수록 국가의 위험이 낮아짐으로써 국채수익률이 낮아지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가 국제금융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

하였으며 재정위험을 측정할 때 국가부채수준과 재정수지가 직접적인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정도진] 본 연구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기재부에서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보다 법적 부담의무가 있는 채무를 더욱 중시함에 따라 재정관리 측면에서 발생주의 정보인 부채보다 현금주의 채무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을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앞으로 수행할 연구에서 연금충당부채 등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채와 채무의 혼란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센터의 연구결과가 국가정책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번 연구결과가 해외에 게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2017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16.), 동국대학교 경영관〉

07

기본과제 관련 IMF 출장 후기

1 2017 기본과제 관련 IMF 담당자 인터뷰

이번 출장의 목적은 기본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세부과제인 ‘발생주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발생주의 기능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정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GFS’)를 산출하는 IMF 담당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전에 발생주의 재정정보와 GFS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학술적, 실무적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가.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17.9.24 ~ 2017.9.28
- 출장지: 미국 Washington D.C.
- 출장자: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김선재 특수전문직 3급

〈세부 일정〉

일자	내 용	참석자
9/25(월)	해외 국가의 발생주의 GFS 정보 활용사례 및 재정건전성 방안	IMF Economist, Philip Stokoe
9/26(화)	발생주의 도입의 기대효과 및 차별성 논의	IMF Senior Economist, 김대행 박사

나. 주요내용 요약

□ 주제 1: 해외 국가의 발생주의 GFS 정보 활용사례 및 재정건전성 방안*

IMF에서 실제 국가별 GFS 통계를 취합하고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국가별로 무기시스템, R&D, 보험·연금 등 별도의 계정에 대해 GFS정보 이외의 정보를 관리하는지 여부, 국가별 정보 수준 차이 및 작성기준의 차이에 대한 IMF의 입장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IMF는 국가별 GFS정보 이용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국 관계자들과의 협력하고 있고, GFS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교육수행 등의 노력 중에 있다.

새로운 GFSM 2014가 발생주의 기준을 채택한 사유와 국가별 기준 적용 실태, 기존 현금주의 기준과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정보 차이, 기준 변경 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였다. IMF 담당자는 발생주의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발생주의 정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금주의 정보에 비해 훨씬 더 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정보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한 IMF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사례와 재정정책에서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분기 또는 반기별 GFS 제출 국가도 확인하였다.

* 주제 1의 인터뷰 대상자인 Phil Stokoe은 영국 소재 Lancaster University를 졸업하고 현재 IMF 소속 Government Finance Division 내의 Statistics Department에서 Economist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이 있다.

□ 주제 2: 발생주의 도입의 기대효과 및 차별성 논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의 저해요소 및 활용제고방안, 발생주의 GFS정보를 활용한 통계분석의 유의성에 대해 문의하였고, 국가별 공적연금 정보의 공개수준 및 관련 총부채 공개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IMF측의 재정지표 등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IMF 담당자는 경제학자들에게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고 정보자체가 부족한 발생주의 보다는 현금주의 정보가 더 유용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적연금 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만이 2년에 한 번씩 추계의 연금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가 부족하고, 지표를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정지출이 장단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기예측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정부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초래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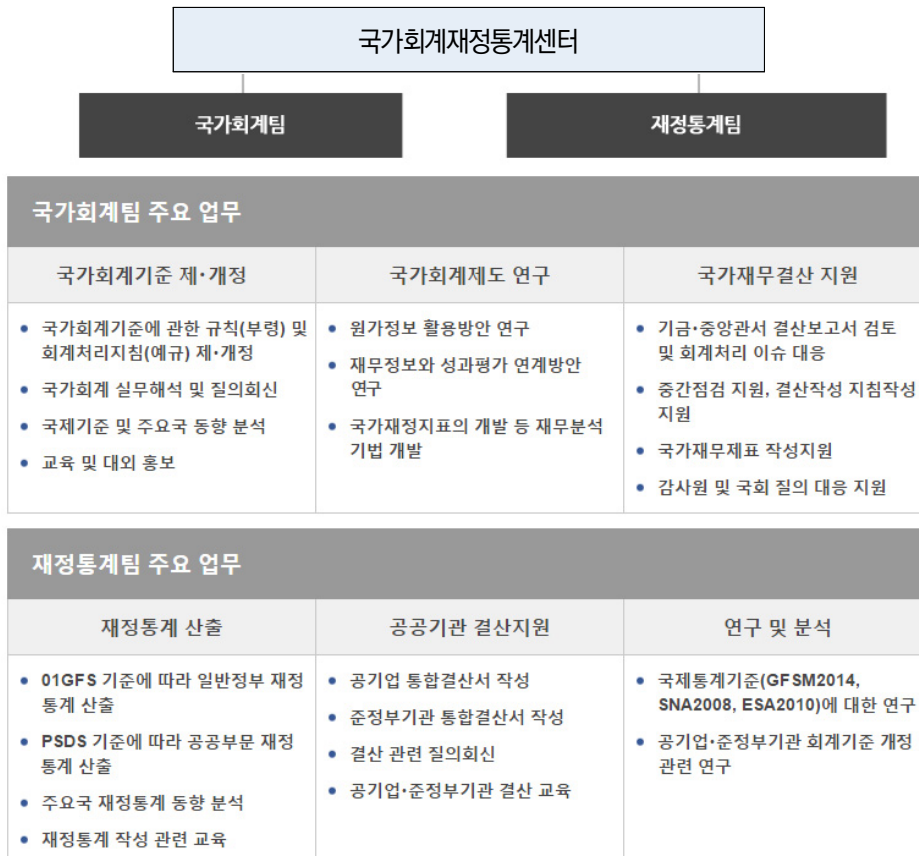
* 주제 2의 인터뷰 대상자인 김대행 박사는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IMF 소속 Southern 1 Unit의 European Department에서 Senior Economist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Government size and intersectoral income fluctuation이 있다.

08

공지사항: 연구과제 수요조사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8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8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4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 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 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뉴스레터 검토 총괄)

우원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뉴스레터 편집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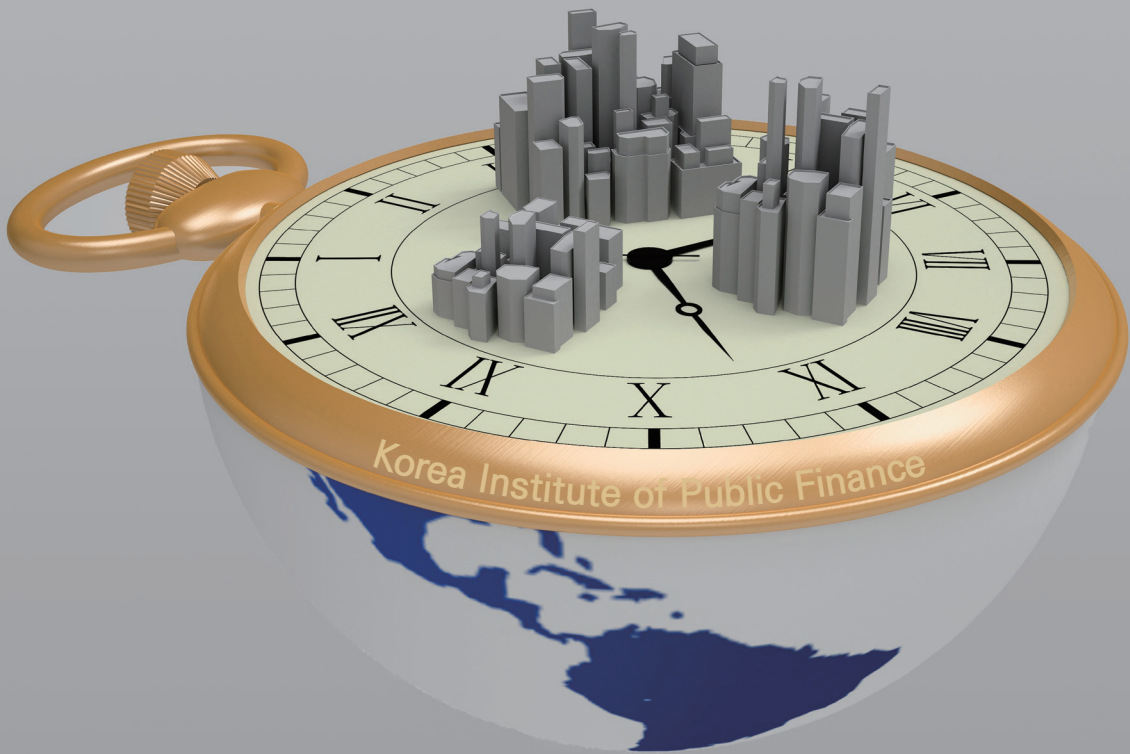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7년 12월 29일 발행